#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광주광역시장 및 국가보훈처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허가 신청(건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허가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와 그 가족 등이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2003. 7.15 ~ 8. 4(21일간)
○ 예고방법 : 성주군홈페이지 게재 및 군청, 읍면게시판 게시
○ 결 과 : 제출의견 없음

**5. 참고자료**

○ 시·군세 감면조례개정표준(안) 통보(도 세정13400-11771, 2003. 7. 2)

성주군조례 제 호

#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br>1. ~ 4. (생략) |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br>----------<br>----------<br>----------<br>----------<br>1. ~ 4. (현행과 같음) |